

『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문구 및 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조례 문구 수정 및 별지 서식(제1호~제7호서식)에 있는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문구 및 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의 본문과 별지 해당 서식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대체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검토결과

• 본 개정조례안은

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(2014. 8. 7.시행)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 본문과 별지 서식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